

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9. 12 . 18 평창군수(종합민원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9. 12. 20
- 다. 상정일자 : 제73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제1차조례특위('99.12.21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종합민원실장 김일래)

가. 제 안 이 유

- '99. 3.12 주차장법 개정으로 종전의 노외주차장 설치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하고,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등 주차장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신고를 통보제로 변경(안제12조)
- 부설주차장을 설치 아니할 수 있는 있는 예외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
-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및 폐지신고를 삭제(안제15조의 내지4)
-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는 상위법에 폐지된 것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폐지(안제18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허해성)

-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는 '99.3.12일 주차장법 개정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개정일은 '99년 2.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된 사항으로 정정하며

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노외 주차장의 신고제를 폐지, 통보제로 변경하고, 건축물등의 부설주차장이 일반의 이용목적에 사용될 경우 이용신고 및 폐지신고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설치의무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

- 상위법에 의한 개정사항으로서 타관련법등 저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지체부자유자 장애인 설치조항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?	○ 설치기준만 없어지는 거지 설치의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님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